

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직인규격(제4조제2항 관련)

직인의 구분	규 격 (단위: 센티미터)
1.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인	지름 또는 한 변의 길이: 3.0 이내
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의 직인	한 변의 길이: 3.0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장의 직인	한 변의 길이: 2.7
4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·각종학교의 장의 직인	한 변의 길이: 2.4